

『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11월 11일

나. 발 의 자 : 최경동, 권재욱, 송용자, 양진오, 장미경, 장세구 의원(6인)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1월 26일

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최 경 동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
농업인에게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
새로운 유통체계 구축 필요
- 먹거리 생산·유통·소비와 관련된 안전·영양·복지·일자리 등 다양한
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공공형 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
으로 설립·운영하여 시민의 건강 기본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
기여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 -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
 -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
-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7조)
- 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제24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, 회계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11. 11. ~ 11. 18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정

- 본 「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은,
 -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선순환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로컬푸드, 공공급식 등 푸드플랜을 총괄할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,
 - 공공성과 사업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재단법인 설립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,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증진,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